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도록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60호(2022.1.18. 일부개정, 2022.8.11.시행)되었음.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,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화 및 관련 불법사행산업 근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발행사업자의 사업 수행 범위 신설 및 수탁사업자의 업무 범위 추가 규정(안 제32조 개정)

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조항 변경)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근거 조항 현행화(안 제37조제3항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“발행사업 위탁운영의 범위”를 “발행사업자 역할 및 위탁운영 범위”로 하고,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며, “제1항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24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법 제31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 관리(상품기획 및 발매시스템 구축·관리·감독을 포함한다)
2.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심사
3. 법 제29조에 따른 투표권 발매금액 관리 및 수익금 배분
4. 체육진흥투표권 건전화 및 관련 불법사행산업 근절(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포함한다)
5. 그 밖에 수탁사업자 위탁운영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2조 “제2항”(구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을 “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체육진흥투표권 발매, 환급, 발매 무효 시 반환금 지급
2. 체육진흥투표권 상품 및 발매시스템 운영(유지 및 보수를 포함한다)

3.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
4. 판매인 선정 및 관리
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발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7조제3항 중 “법 제30조제5항”을 “법 제30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발행사업 위탁운영의 범위) <u><신 설></u>	제32조(발행사업자 역할 및 위탁 운영 범위) <u>① 법 제24조에 따라 체육진흥투 표권 발행 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</u> <u>1. 법 제31조에 따른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 계획 수립 및 사 업실적 관리(상품기획 및 발 매시스템 구축·관리·감독을 포함한다)</u> <u>2.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심사</u> <u>3. 법 제29조에 따른 투표권 발 매금액 관리 및 수익금 배분</u> <u>4.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건전화 및 관련 불법사행산업 근절 (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포함한다)</u> <u>5. 그 밖에 수탁사업자 위탁운 영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u>
<u>①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 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</u>	

<u>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</u> <u>2. 환급금의 지급</u> <u>3.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 (단말기를 포함한다)의 운영, 유지 및 보수(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)</u> <u>4.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</u> <u>5.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</u> 제37조(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) ①~② (생략) ③ 법 제30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10만 원을 말한다.	<u>1. 체육진흥투표권 발매, 환급, 발매 무효 시 반환금 지급</u> <u>2. 체육진흥투표권 상품 및 발매 시스템 운영(유지 및 보수를 포함한다)</u> <u>3.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</u> <u>4. 판매인 선정 및 관리</u> <u>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발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제37조(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제6항 ----- ----- -----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119